

공탁법 교재정정 자료

큰 변동인 없으며, 본 교재가 기초로 한 2019년 법원공무원교육원 공탁실무 교재 내용이 2020년 일부 개정되었기에 그 내용을 반영하였고, 법령개정 관련해서는 공탁금 이자가 1천분의 1로 개정된 내용과, 소멸시효 관련 공탁금출급.회수청구 안내문 관련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 교재에서 발견된 약간의 오타등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 점만 참조하면 종전교재로도 지장이 없도록 이곳에 개정내용을 올립니다.

5) 물취공탁

물취공탁은 일정한 사유

진실성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 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유가증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63조 1항에 따라 발행된 전자등록증명서 포함)공탁...으로 개정

2. 공탁물에 의한 분류

공탁은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금전공탁, 유가증권공탁, 물품공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공탁의 시간적 단계에 의한 분류

보통 최초에 하는 공탁,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본래 의미의 공탁을 기본공탁이라 한다.

4. 공탁의 목적에 의한 분류

순수한 보관만을 목적으로 하는 보관공탁을 형식적 공탁이라 하고, 변제공탁이나 담보공탁과 같이 보관 이상의 법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실질적 공탁이라 한다.

이 피공탁자의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전채권에 대한 일부 압류가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또한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금전채권을 집행공탁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관련선례

공탁서에는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할 때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공탁선례 2-276).

6.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전세권·저당권의 표시

공탁서의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란에는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을 기재하는데, 특히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는 민법상 공탁물회수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예컨대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소 2018.1.2. 접수 제1000호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과 같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6) 으로

7. 반대급부 이행

7) 으로

공탁서의 '반대급부 이행'란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급부이행을 공탁물수령조건으로 변제공탁하는 때에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재가 있으면 피공탁자는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할 수 없다.

8. 관공서 명칭과 건명

8) 으로

공탁물의 출급 또는 인출을 위하여 관공서에서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탁서의 "관공서 명칭과 건명"란에 해당 관공서의 명칭과 관련번호 등을 기재한다. 이는 영업보증공탁서의 특유한 기재사항이다. 예컨대, 영업허가를 받은 후 법령 또는 허가관청의 부결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과 허가 제○○○호"의 예와 같이 그 영업감독관청의 명칭

9.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9) 으로

공탁서의 '법원의 명칭과 사건'란에는 재판상의 절차와 관련된 공탁에 있어서 그 공탁을 명한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이는 재판상 담보공탁서의 특유한 기재사항이다. 예컨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법원 2018가단1000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 등으로 기재한다.

10. 공탁법원란

10) 으로

공탁서의 공탁법원란에는 공탁법원의 명칭을 기재한다. 따라서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지침(행정예규 887호)"에 의하는 경우 특정 공탁소(접수공탁소)의 표시는 특정 공탁소(접수공탁소)가 아닌 관할 공탁소를

11. 공탁신청연월일

11) 으로

공탁서의 신청연월일란에는 공탁신청연월일을 기재한다.

12. 기명

12) 으로

공탁서에는 위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공탁신청서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날인은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날인이나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으로 할 수 있다. 날인제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공탁서 및 위임장의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하여
..로 정정**

2) 피공탁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어야 하는데,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에 문제된다.

- ① 외국인의 경우는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재외국민의 경우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다만, 주재국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
- ② 그 밖에 주소 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여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를 본국 및 대한민국의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그 증명서 및 공탁관이 원본과 동일함을 인정한 사본도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
- ③ 공탁관은 위 ① 및 ②에 따라 제출된 문서가 외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인 경우 그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공증법」 30조 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 또는 「외국공무서에

2. 담보물 변경의 허용 여부

- 고 이다(1977.12.15)

공탁물품의.....
로

공탁법 기본서

4절

공물품의 매각·폐기³⁾

1. 의의

공탁물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하여 공탁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공탁법 제11조). 「공탁법」 제11조에 따라 보관 중인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나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직권 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허가재판을 변경할 수 있다.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대상공탁 물품

공탁물품이란 공탁물보관자가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 중 금전,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⁴⁾

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탁자 본인 작성의 서면(인감증명 첨부 또는 공증)을 제출하여야만 한다(2015.10.6. 사법동원-3536 직권선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에게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인인 부모가 호적상 미수복지구 거주자로 기재된 부재자로 피공탁자를 “망 임대인의 상속인”이라고 기재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한 경우에, 법원은 피공탁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의 수령행위를 허가받은 위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위 부재자가 망 임대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호적·제적등본)과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심판 결정문 등) 및 그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피공탁자의 재산관리인(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공탁한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공탁선례 1-105).

아래 위 부분
별개의 선례이므로
분리요망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인 공탁자의
승낙서를 ...로 정정**

2)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①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다만, 청구인이 공탁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② 피공탁자가 **이해관계인인 공탁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공탁자의 승낙서에는 공탁통지서의 첨부없는 피공탁자의 출급청구에 대한 승낙의 취지를 기재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강제집행 또는 채납처분에 의하는 경우 즉,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공탁물을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집행채무자인 피공탁자로부터 공탁통지서를 교부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세무서장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도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④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즉,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나 채권자의 주소불명을 이유로 한 변제공탁의 경우와 같이 공탁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공탁관이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온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공탁원인소멸로 인한 회수

(1) 변제공탁

당사자간의 협의해결로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채권포기 증명서면(인감증명서 첨부)이 공탁원인소멸 증명서면이 된다. 또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취소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공탁원인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공탁자가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공탁선례 2-111)

감독

(2) 담보공탁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 정보와 확정증명서가 공탁원인소멸 증명서면이 된다. 영업보증공탁은 종류에 따라 공탁원인의 소멸사유가 일정하지 않으나,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은 대부분 **감독관**의 승인서가 될 것이다.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이자·이표의 지급

가. 공탁금 이자의 지급

연1천분의 1

1) 의의

- ①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으며, 공탁금의 이자에 관하여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는데, 현재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이다(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2조).
- ② 공탁시와 지급시 사이에 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탁시의 이율을 지급시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지급시의 이율을 공탁시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탁시부터 이율 변경 전일까지는 변경 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2) 이자의 청구권자

- ①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때에는 공탁자에게,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때에는 피공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담보공탁의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피공탁자의 담보권이 미치지 않는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공탁관을 과오납부자로 보아 규칙 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② 공탁관은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시킨 공탁금이 있음을 알거나 그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공탁금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반환신청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착오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8. 공탁금출급 · 회수청구 안내문 발송

1) 목적

공탁금출급청구 안내문 발송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출급되지 아니한 변제공탁사건과 재판상 보증공탁사건 및 집행공탁사건에 대한 공탁금의 회수를 촉구하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국고 귀속되는 공탁금의 회수를 촉진하는 데 있다. 이에 관하여는 대법원 행정예규 947호 “공탁금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교체

2) 대상 사건 및 대상자

- ① 직전 연도말 기준 “만 2년 전 및 만 4년 전에 수리된 변제공탁사건 및 집행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사건의 피공탁자”와 “만 2년 전 및 만 4년 전에 수리된 재판상 보증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사건의 공탁자”

②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가압류, 반대급부조건 등)의 유무는 상관없다. 또한, 예규 제정 당시에는 “변제공탁사건 중 공탁통지서가 송달되었음이 공탁기록상 나타나는 사건”에 한하여 안내문을 통지하도록 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여 변동된 현주소로 통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는 “주소불명 또는 절대적 불확지가 아닌 모든 사건”에 대하여 발송한다.

3) 안내문 발송

공탁관은 매년 4.1.부터 5.31. 사이에 대상 사건에 대하여 발송대상자의 주소변경 여부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조회하여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로 발송한다. 발송한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 이를 폐기한다. (예)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경우)에는 안내문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교체

4) 안내문송달과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송달일로부터 시효가 진행되지만 공탁후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그러나 안내문이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출급·회수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국고귀속 처리한다.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은 안내문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탁 후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5) 유의사항

공탁금출급·회수청구 안내문은 공탁서 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없다.

**공탁법요약집
50페이지 내용
과동일**

8.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

1) 담당

안내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 처리하며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

2) 안내 방법

① 안내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에 관한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하되, 필요한 경우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알릴 수 있다.

3) 대상사건 및 대상자

① 직전연도 말 기준 만 2년, 4년, 6년 및 8년 전인 해에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절대적 불확지 변제 공탁사건 또는 대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안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변제·집행공탁사건의 피공탁자

2.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공탁자

② 제1항의 경우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관한 지급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③ 공탁종류, 잔액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안내문 발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이외의 공탁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도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4) 안내문 발송

①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대하여 주소변경 여부 등을 전산시스템 등으로 조회하고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로 발송한다.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에는 폐기한다. 다만, 반송사유가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부재일 경우에는 안내문을 다시 발송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고 송달된 날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다만,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③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국고귀속 처리한다.

④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사건은 안내문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⑤ 안내문은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없다

2) 공탁규칙

공탁규칙은 공탁법의 시행세칙으로서 구체적인 공탁절차를 총망라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탁 절차와 관련하여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규칙 64조의2).

연1천분의 1

3)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은 공탁법  시행세칙으로서 공탁금의 이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4) 공탁절차에 관한 특별규정

공탁근거법령 중에는 공탁의 요건뿐만 아니라 특별히 공탁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예가 다수 있는데, 이러한 공탁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민법 488조 2항, 비송사건절차법 53조와 54조 등을 들 수 있다.

가등기담보권자...로 수정

(민법 443조). 위와 같이 주채무자가 배상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공탁한 경우에 피공탁자인 수탁 보증인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수증 등을 첨부하면 될 것이다.

- 4) 정산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 채권자(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하여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8조 1항).

채권자가 이와 같이 공탁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등과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공탁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것으로 보며, 채권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4조에 규정한 경우 외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8조 2항, 3항, 4항).

법관의 검열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제출자에게 반환하다(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13조).

4. 담보권의 성질 및 담보권의 범위

가. 담보권의 성질

민사소송법은 담보권리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123조), 민사집행법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민사집행법 19조). **담보권리자가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는, 공탁물의 출급에 관한 우선적·배타적 청구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담보권리자는 피담보채권의 발생과 동시에 직접 공탁물의 출급을 받음으로써 우선적 만족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우선적 출급(환부)청구권**

나. 담보권의 범위

1) 가압류(가처분) 관련 담보공탁

위 표기부분 모두 삭제

- ① 가압류(가처분)를 위한 담보공탁은 공탁물을 담보로 하기 위한 공탁인데, 공탁 이후 가압류(가처분)가 부집행·집행불능된 경우라도 그 가압류(가처분)의 존재만으로 피공탁자는 명예훼손 또는 신용저하, 불안 등 정신상의 손해를

(3) 권리행사 최고기간의 만료

- ①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의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사유가 된다(민사소송법 125조 3항).
- ② 소송의 완결이라 함은 담보권의 객체인 피담보채권(소송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확정되고 그 금액의 계산에 장애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가압류사건의 경우 가압류의 본안사건이 계속중이라면 가압류사건이 완결되었다 하여도 담보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를 최고할 수 있는 소송완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비록 보전처분이 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취소 확정되고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민사소송법 125조에서 말하는 '소송이 완결된 뒤'라고 볼 수 없고, 계속 중인 본안사건까지 확정되어야만 소송의 완결로 인정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의 취하가 있더라도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소송완결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본안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가처분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사건의 완결로써 소송완결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③ 권리행사최고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담보권리자에게 한다. 법원은 사건이 완결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완결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송달하는데 권리행사기간은 통상 1~2년이다.

위 표기부분 모두 삭제하고
아래내용으로 수정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비록 보전처분이 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취소 확정되고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민사소송법 125조에서 말하는 '소송이 완결된 뒤'라고 볼 수 없고, 계속 중인 본안사건까지 확정되어야만 소송의 완결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본안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가처분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사건의 완결로써 소송완결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관할공탁소

집행공탁은 원칙적으로 어느 공탁소에 공탁하여도 무방하다.

3. 공탁의 당사자 및 목적물

- ①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의한 집행공탁의 공탁자는 제3채무자이고, 집행절차에 부수해서 행해지는 집행공탁의 성질상 제3자는 공탁자(제3채무자)에 갈음하여 공탁할 수 없다.
- ②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의한 집행공탁의 피공탁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서나 피공탁자로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므로 공탁신청시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으며,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였더라도 피공탁자의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의하여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액 전액을 권리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도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는 변제 공탁적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 ③ 집행공탁에 있어서 공탁물은 금전에 한한다.



168

**민사집행법 248조의 집행공탁
에....로 수정**

할 수는 없다.

-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부당이득반환채무, 지상권 당사자의 지료증감청구(민법 286조)로 인한 지료의 금액처럼 나중에 재판을 통하여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될 수 있는 채무도 이론적으로는 이미 객관적으로 채무금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정채무로 보아 공탁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 채무자 등은 스스로 주장하는 채무액 전액에 불법행위일로부터 변제제공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해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3)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손해배상채무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금액을 변제제공하였으나 채권자가 수령거절하는 등의 변제공탁사유가 있으면 채무자는 변제공탁할 수 있다. 다만, 이때의 변제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이 원래의 변제공탁과는 다르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이 공탁된 돈 자체를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차액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공탁원인이 소멸된 것이므로 공탁자인 피고로서는 공탁원인의 소멸을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2011다17847 판결)...

로 수정

② 후에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변제받은 때에는 변제받지 못한 부분

이 부분에 (7)로 아래애용 추가하고 그아래 일련 번호수정

무자 등에게의 교부절차를 밟는다(민사집행법 161조 2항 3호).

(7)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민사집행법 160조 2항)

채권자

채권자

(재민

에 하

한 때

(8) 저당

저당

니지

로, 입

(9) 저당

부동

채권

(7) 사해행위취소 가처분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 민사집행법 160조 집행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고, 그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취소채권자나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로서는 추가배당 이외의 다른 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으므로, 취소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대판 2009. 5. 14. 2007다64310).

□ **관련판례** :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의하여 배당할 금액이 공탁된 후에는 그 배당액의 지급절차는 공탁금의 출급절차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기한 것이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채권자가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서 그에 관하여 집행법원이 발급한 공탁금 지급위탁서가 공탁공무원에게 접수됨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9. 7. 23. 2009다39363).

또는 일부가 배당재단으로 편입되어 집행절차에 따라 채권자 등에게 배당되는 점에서 집행 공탁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2) 지급절차

연1할 2푼

- ① 항고가 기각, 각하, 취하된 경우 항고인이 채무자 또는 소유자인 경우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전액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고, 항고인이 그 이외의 자인 경우는 항고를 한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1할 5푼의 이율에 의한 금액, 그 지연손해금만 배당할 금액에 포함된다. 집행법원은 보증으로 공탁된 금액을 포함하여 배당을 한 후, 지급위탁절차에 따라 출급된다.
- ② 항고인용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공탁자는 공탁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공탁의 성질이 담보공탁이 아닌 집행공탁이기 때문에 담보취소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공탁서와 항고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해당 보증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집행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것에 한함)을 첨부하여 공탁물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항고가 기각되었더라도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경매절차가 취소된 때 항고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항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병의...로 정정

사례 2)

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병은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된 후 정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다는 양도통지서가 송달되었음에도 갑은 채권양도사실을 간과한 채,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집행공탁(민사집행법 248조 1항, 291조)을 하였다. 이후 갑이 혼합공탁으로 변경하는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가?

해설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집행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를 '을 또는 정'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에 채권양도로 인한 변제공탁사유를 추가하여 혼합공탁으로 하는 공탁서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공탁선례 2-309).

2) 공탁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2019년, 288,293면.

한 때)

- ②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법원의 담보취소결정 정본 및 확정증명서)이 제출된 때
- ③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
- ④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7.7.1. 시행)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160조 1항 각 호(부동산강제경매 배당절차에서...)
 (나) 민사집행법 256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160조 1항 각 호(채권배당절차에서...)
 (다) 민사집행법 268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160조 1항 각 호(부동산임의경매 배당...)
 (라) 민사집행규칙 156조 1항 각 호(집행관의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액에 대한 지급제한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때

이 부분에 아래내용 추가

- ①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에는 공탁관은 먼저 송달된 압류

□ **관련판례** : [민사집행법 160조](#)에 의하여 배당할 금액이 공탁된 후에는 그 배당액의 지급절차는 공탁금의 출급절차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기한 것이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채권자가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서 그에 관하여 집행법원이 발급한 공탁금 지급위탁서가 공탁공무원에게 접수됨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제3채권자가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그 효력은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행사 수단인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09. 7. 23. 2009다39363)